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성명 : 정민주
건명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학운위 진행방침 제·개정
소개년월일	2013년 1월 24일
<p style="margin-top: 20px;">소개의견</p> <p>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학생자치상임위원회 소속 청소년 의원입니다. 2013년 1월 15회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학운위 진행방침 제·개정』입니다.</p> <p>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제 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 31조에서는 ‘국립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회의 목적인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는 목적과 달리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모순점 때문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과 학교운영회 운영을 위한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p> <p>본 청원인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p> <p>*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2절 제 31조에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비롯한 학생 대표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정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p> <p>위와 같은 내용에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이 제안할 청원을 소개합니다.</p>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청원인 '정민주'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소속 학생자치위원회 청소년의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은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의 운영을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정에서 학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발언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고 학생자치활동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되어야 하는 초·중등 교육법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업에 바쁜 학부모들은 학생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학부모는 학교상황을 잘 몰라 반대 의견을 못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학생대표가 학생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자신들의 문제에 관해 발언함으로써 학생이 학교 구성원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또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 중등 교육법 제 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 31조를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골자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안이 구체화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 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 31조를 이와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u>학생 대표단</u> ,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개정) *여기서 학생 대표단은 학생회장단과 학급회장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대표단이 의견 반영시 학생대표단 구체적방안과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p>제32조(기능)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p>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p> <p>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 <u>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때 학생생활에 관련된 안건인 3항,4항,6항,10항,12항,13항으로 활동범위를 제한한다. (제정)</u></p>
--	--

[전문개정 2012.3.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공정하고 투명한 회의를 위해 안건과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한다. (제정)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